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 기술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에 대한 형벌 수준 하향 등 〉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2141호)

2024. 9.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총괄 검토의견	3
2. 개별 법률별 검토의견	5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
2) 「화학물질관리법」	8
3)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11

I. 제안경위

2024년 7월 23일 정부가 제출한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2024년 7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안전 등 중요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의 의무·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행정제재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형벌규정을 합리화하는 내용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제1조)

기술관리인을 두지 않은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나. 「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안 제2조)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자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금고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형사상 책임에 비례하여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다.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제3조)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함으로써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상수원을 오염시킴으로써 먹는 물의 사용에 위험을 끼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으로 형량을 하향 조정하고, 같은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하여는 무기 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며,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상수원을 오염시킴으로써 먹는 물의 사용에 위험을 끼친 자 등이 3년 내에 누범의 죄를 범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형법의 누범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Ⅲ. 검토의견

1. 총괄 검토의견

개정안은 ①국민의 생명·안전 등 중요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②형벌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도 처벌이 과도하거나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지 않는 경우 형량을 차등화하는 등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형벌규정을 합리화하려는 취지¹⁾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안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및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소관 3개 법률에 대한 일부개정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일괄개정안 주요 내용]

연 번	법률안	대상	개정 내용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51조제8호삭제 및 제53조제3항 신설)	처리시설 설치·운영자	현행 기술관리인을 두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 개선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2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57조)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현행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금고나 2억원 이하의 벌금 개선 상해사고 법정형은 7년 이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하향

1)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 및 1차 개선과제, 2022.8.26., 경제 형벌규정 개선 범부처 T/F

연 번	법률안	대상	개정 내용
3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3조제1항·제2항)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하여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상수원을 오염시켜 먹는 물의 사용에 위험을 끼친 경우	현행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개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현행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개선 상해사고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하향
		누범의 가중	현행 오염물질 불법배출 등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이 끝나거나 집행을 면제받은 지 3년 내에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개선 삭제

개정안과 같이 형벌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완화하면 경제 형벌규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제재효과를 유지하면서 민간의 경제활동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보임.

참고로,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²⁾,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³⁾ 및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⁴⁾이 제안되었으나 임기만료폐기되었음.

2) 의안번호 제2122332호(정부 제출)

3) 의안번호 제2119573호(정부 제출)

4) 의안번호 제2122323호(정부 제출), 의안번호 제2119586호(정부 제출)

2. 개별 법률별 검토의견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제1조)

개정안은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기술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제재수준을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8호 삭제 및 제53조제3항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7. (생략) 8.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 9. · 10. (생략)	제51조(벌칙) ----- ----- -----. 1. ~ 7. (현행과 같음) <u><삭제></u> 9. · 10. (현행과 같음)
제53조(과태료) ① · ② (생략) <u><신설></u>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제53조(과태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 제4항----- -----

현행	개정안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 -----.

현행법⁵⁾에 따르면, 일정한 규모 이상⁶⁾의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기술업무를 전담하는 기술관리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의무를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이는 가축분뇨처리시설에서 방류되는 방류수의 수질검사를 정확히 실시하는 등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저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보이나, 유사한 기술관리인 제도를 두고 있는 「폐기물관리법」⁷⁾, 「하수도법」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이용에 관한 법률」⁹⁾ 등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기술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해당 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2. 「물환경보전법」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이 선임된 사업장의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

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처리시설)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기술업무를 담당할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처리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처리시설. 다만, 자원화시설에 따라 가축분뇨를 퇴비화하거나 액비화하여 조지·농경지 등에 퇴비와 액비로 이용하는 처리시설은 제외한다.
2. 법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공공처리시설

7) 「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고 기술관리 대행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에서는 기술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에게 벌금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형평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음.¹⁰⁾

이에 개정안은 기술관리인을 두지 않은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 현행법 제51조 제8호를 삭제하고, 안 제53조제3항을 신설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유사한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의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8) 「하수도법」 제80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6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

9)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

10)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 및 1차 개선과제, 2022.8.26., 경제 형벌규정 개선 범부처 T/F

2) 「화학물질관리법」(안 제2조)

개정안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한 벌칙 수준을 피해 정도와 그 책임에 비례하도록 사망과 상해를 나누어 차등화하려는 것임(안 제57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7조(벌칙)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u>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금고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제57조(벌칙) ----- ----- --- <u>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현행법 제57조¹¹⁾에서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금고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상해와 사망은 피해의 정도가 각기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하여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금고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11) 「화학물질관리법」 제57조(벌칙)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금고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있어, 형사상 책임에 있어 형평성이 맞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있음.¹²⁾

이에 개정안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를 처벌하고자 할 때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금고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수준을 하향하여 조정하려는 것으로, 발생한 피해의 경중을 고려하여 벌칙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으로 보임.

[현행 대비 개정안의 효과]

구분		현행	개정안
제57조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	10년 이하의 금고나 2억원 이하의 벌금	(사망) 10년 이하의 금고나 2억원 이하의 벌금
			(상해) 7년 이하의 금고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참고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¹³⁾에 따르면 의사가 업무상 과실로 뇌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뇌사판정을 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

12)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 및 1차 개선과제, 2022.8.26., 경제 형벌규정 개선 범부처 T/F

13)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7조(벌칙)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문의사 또는 진료담당 의사가 업무상 과실로 뇌사조사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뇌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뇌사판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24.>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도록 하고,

「전력기술관리법」¹⁴⁾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로 송전설비·변전소 등 전력시설물의 주요 부분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사망과 상해에 대한 최고 양형 수준을 상이하

14) 「전력기술관리법」 제27조의2(벌칙) ①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는 설계 또는 공사 감리를 하여 「전기공사업법」 제15조의2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송전설비·변전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시설물의 주요 부분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일반인을 위험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7조의3(벌칙) ① 업무상 과실로 제27조의2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업무상 과실로 제27조의2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안 제3조)

개정안은 ①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상수원을 오염시킴으로써 먹는 물의 사용에 위험을 끼친 자에 대한 징역 수준을 ‘3년 이상 15년 이하’에서 ‘1년 이상 10년 이하’로 하향하고, ② 오염물을 불법배출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한 벌칙 수준을 피해 정도와 그 책임에 비례하도록 사망과 상해를 나누어 차등화하며, ③ 누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8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오염물질 불법배출의 가중 처벌) ①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함으로써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상수원을 오염시킴으로써 먹는 물의 사용에 위험을 끼친 자는 <u>3년 이상 15년 이하</u> 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조(오염물질 불법배출의 가중 처벌) ① ----- ----- ----- ----- ----- <u>1년 이상 10년 이하</u> -----.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무기 또는 <u>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u>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u>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u>

현행	개정안
③ (생략) 제8조(누범의 가중)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또는 제7조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면제받은 지 3년 내에 제3조제1항, 제4조제3항 또는 제7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제7조의 죄를 범한 자는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함으로 인하여 취득한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u>한다.</u> ③ (현행과 같음) <u><삭 제></u>

첫째, 현행법 제3조15)에서는 오염물질을 배출함으로써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상수원을 오염시킴으로써 먹는물의 사용에 위험을 끼친 자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 15)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오염물질 불법배출의 가중처벌) ①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함으로써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상수원을 오염시킴으로써 먹는 물의 사용에 위험을 끼친 자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③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4호를 위반한 자로서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농업, 축산업, 임업 또는 원예업에 이용되는 3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해당 용도로 이용할 수 없게 한 자
 2. 바다, 하천, 호소(湖沼) 또는 지하수를 별표 1에서 정하는 규모 및 기준 이상으로 오염시킨 자
 3. 어패류를 별표 2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집단폐사(集團斃死)에 이르게 한 자

하고(제3조제1항), 이로 인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제2항)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형법」 16)상 유사 조항 대비 형량이 과도할 뿐만 아니라 피해의 정도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상해와 사망에 대하여 동일하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형평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됨.¹⁷⁾

[「환경범죄단속법」 과 「형법」 유사조항 비교]

구분	법률	현행 조항 및 형벌
제3조 제1항	환경범죄 단속법	(제3조제1항) 오염물질 불법배출로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먹는 물의 사용에 위험을 끼친 자 ⇒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
	형법	(제192조제2항) 먹는 물에 독물이나 그 밖에 건강을 해하는 물질을 넣은 자 ⇒ 10년 이하의 징역 (제193조제2항) 수돗물 또는 그 수원에 독물이나 그 밖에 건강을 해하는 물질을 넣은 자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3조 제2항	환경범죄 단속법	(제3조제2항)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194조) 제192조제2항 및 제193조제2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6) 「형법」 제16장 먹는 물에 관한 죄

제192조(먹는 물의 사용방해) ① 일상생활에서 먹는 물로 사용되는 물에 오물을 넣어 먹는 물로 쓰지 못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먹는 물에 독물(毒物)이나 그 밖에 건강을 해하는 물질을 넣은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93조(수돗물의 사용방해) ① 수도(水道)를 통해 공중이 먹는 물로 사용하는 물 또는 그 수원(水源)에 오물을 넣어 먹는 물로 쓰지 못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먹는 물 또는 수원에 독물 그 밖에 건강을 해하는 물질을 넣은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94조(먹는 물 혼독치사상) 제192조제2항 또는 제193조제2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7)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 및 1차 개선과제, 2022.8.26., 경제 형벌규정 개선 범부처 T/F

이에 개정안은 오염물질 불법배출자에 대한 형량을 현행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으로 하향 조정하고(안 제3조제1항),

먹는 물의 사용에 위험을 끼쳐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를 처벌하고자 할 때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해서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벌칙 수준을 하향하여 조정하려는 것(안 제3조제2항)으로, 벌칙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으로 보임.

[현행 대비 개정안의 효과]

구분		현행	개정안
제3조 제1항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함으로써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상수원을 오염시킴으로써 먹는 물의 사용에 위험을 끼친 자	3년 이상 15년 이하 유기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유기징역
제3조 제2항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상해) 무기 또는 3년 이상 유기징역

다만, 안 제3조제1항은 유사 조항인 「형법」 제193조제2항(2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형량보다도 낮은 수준인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으로 형량을 조정하고 있는데,

현행법¹⁸⁾에서 오염물질 불법배출(제3조), 폐기물 불법처리(제7조) 등

에 대하여 가중처벌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불법배출 등의 행위로 인하여 불특정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특별히 고려한 취지로 보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현행법 제5조제2항¹⁹⁾에서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에 대하여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사상(死傷)에 대하여 동일한 형량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할 때 과실범에 대한 형량 또한 상해와 사망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둘째, 개정안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오염물질 불법배출의 가중처벌)²⁰⁾, 제4조(환경보호지역 오염행위 등

18)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환경 또는 자연환경 등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및 단속·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과실범) ①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조제2항(오염물질 불법배출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또는 제4조제3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조제3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오염물질 불법배출의 가중처벌)
①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함으로써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상수원을 오염시킴으로써 먹는 물의 사용에 위협을 끼친 자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4호를 위반한 자로서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농업, 축산업, 임업 또는 원예업에 이용되는 3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해당 용도로 이용할 수 없게 한 자
2. 바다, 하천, 호소(湖沼) 또는 지하수를 별표 1에서 정하는 규모 및 기준 이상으로 오염시킨 자

의 가중처벌)²¹⁾, 제5조(과실범)²²⁾ 및 제7조(폐기물 불법처리의 가중처벌)²³⁾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면제받²⁴⁾은 지 3년 내에 같은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동법 제8조²⁵⁾에 따른 누범의 가중규정을 삭제하고, 「형법」²⁶⁾에 따른 누범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임.

3. 어패류를 별표 2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집단폐사(集團斃死)에 이르게 한 자

- 21)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환경보호지역 오염행위 등의 가중처벌) ① 환경보호지역에서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형(刑)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 ② 환경보호지역에서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2호(「자연환경보전법」 제2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제3호,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제3호(공원구역 중 공원자연보존지구와 공원자연환경지구의 경우만 해당한다), 「습지보전법」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수도법」 제7조제4항제3호를 위반하여 토지를 300제곱미터 이상 형질변경한 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③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하거나 제2항의 죄를 범하여 환경보호지역을 그 설정 또는 지정의 목적을 상실하게 할 정도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22)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과실범) ①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조제2항 또는 제4조제3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조제3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3)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폐기물 불법처리의 가중처벌) 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폐기물관리법」 제63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함으로 인하여 취득한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 24) 「폐기물관리법」 제6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併科)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린 자
 2.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한 자
 3. 제1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한 자
- 25)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누범의 가중)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또는 제7조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면제받은 지 3년 내에 제3조제1항, 제4조제3항 또는 제7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제7조의 죄를 범한 자는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함으로 인하여 취득한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 26) 「형법」 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환경범죄 단속법과 형법의 누범 형량 비교]

법률명	조항	구성요건 및 누범형량
환경범죄 단속법	제8조	- (구성요건)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또는 제7조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면제받은 지 3년 내에 같은 죄를 범한 경우 - (누범형량)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35조	- (구성요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경우 - (누범형량)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

현행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제5조 또는 제7조에 규정된 오염물질의 불법배출의 가중처벌, 환경보호 지역 오염행위 등의 가중처벌 등의 규정상 그 처벌의 정도가 각기 다른데도 불구하고, 동법상 누범의 가중규정이 일률적으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형평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별칙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환경범죄 단속법」 누범의 가중(제8조) 요건]

조 항		행 위	벌 칙
제3조	제1항	오염물질 불법배출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 먹는 물의 사용에 위험을 끼친 자	3년 이상 15년 이하 유기징역
	제2항	오염물질 불법배출로 사람이 죽거나 다치게 한 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3항	오염물질 불법배출로 1. 농업, 축산업 등 300㎡ 이상의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 한 자 2. 바다, 하천 등을 별표 1에서 정한 규모 이상 오염시킨 자 3. 어패류를 별표 2에서 정한 규모 이상 집단폐사 시킨 자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제4조	제2항	환경보호지역에서 「자연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하여 토지를 300㎡ 이상 형질을 변경한 자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
	제3항	오염물질 불법배출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환경보호지역을 그 설정 또는 지정의 목적을 상실하게 한 자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5조	제1항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제2항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조제2항 또는 제4조제3항의 죄를 범한 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항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조제3항의 죄를 범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7조		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원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폐기물관리법」 제63조의 죄를 범한 자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불법매립으로 인한 취득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벌금 병과

또한 동법 제7조²⁷⁾에 폐기물 불법처리에 따른 벌금의 병과 부분이 이미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동법 제8조의 후단 부분(벌금 병과규정)을 삭제하더라도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임.

27)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폐기물 불법처리의 가중처벌) 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폐기물관리법」 제63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함으로 인하여 취득한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폐기물 불법처리에 따른 벌금의 병과 규정 비교]

조항	규정 비교
제7조	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폐기물관리법」 제63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u>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함으로 인하여 취득한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u>
제8조 후단	이 경우 제7조의 죄를 범한 자는 <u>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함으로 인하여 취득한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u>

문 의 처

02)6788-5536